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시행 지침

제정 2018.06.01.

개정 2024.04.01.

1. 근거

- 가.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나. 관련 규정: 법인 정관 제67조, 윤리규정 제4조, 교원복무규정 제5조, 제5조의2, 직원복무규정 제9조, 취업규칙 제12조
- 다.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교직원도 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 라. 직원은 법인 정관 제67조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함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가)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나) 교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총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나. 교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영리 업무 구분

- 1)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가)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칭과 관계없이 그 교직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가)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나)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고문·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가)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물품·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가)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증권·부동산·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나)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 다)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 교원복무규정 제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

1) 교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나)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교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부서의 기능 및 대학 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담당직무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담당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나)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교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금전 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대학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교원은 대학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4) 대학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대학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 나) 대학이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장애인·학

생·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다) 위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5) 영리업무가 위 1)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원복무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가) 다음과 같이 대학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련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3. 겸직허가

가. 대상

- 1) 영리업무: 교원복무규정 제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2)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나. 허가기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1) 교직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다. 허가권자: 총장

라. 절차

1) 신청) 해당 교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교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교원복무규정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총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4)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

5) 겸직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제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겸직현황 조사 실시

1) 겸직실태 조사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2) 조사결과 보고

-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외부강의등

가. 대상: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나. 비대상: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등

다. 신고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2020.5.27. 관련 법령 개정)

라. 사례금 상한액

- 1시간당 100만원, 총액한도 제한 없음
-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사례금이 확정되면 10일 이내 신고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하여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신고 절차

- 1)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2주 전에 전자문서를 통해 교원인사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고하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도 가능
- 2) 총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바. 미신고 시 제재 사항

- 징계 회부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스쿨/학과)			직 위 (직급)			성명		
겸직 신청 내용	기관명			겸직 직위			겸직장소 (소재지)			
	겸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연) 평균 횟수 : - 1회 평균 시간 :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총액 :	원		- 1회 평균 대가 : 원 (실비 별도 지원 여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첨부 필수> 겸직기관의 요청서(기관 자체 서식), 겸직허가 원장 의견서(붙임2)

20

신청자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겸직허가 원장 의견서

겸직허가 원장 의견서

겸직 신청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겸직신청 내용	겸직기관명(계약업체) :	겸직신청기간 :
	겸직업무 :	
	겸직보수 :	

작성 항목	의 견
스쿨 원장으로서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겸직 업무가 스쿨에 도움이 되는 측면	
전임교원으로서 담당수업, 학생지도 등에 미칠 영향 정도	
스쿨 내 타 교수의 동의 정도	
종합 의견 (겸직 추천 여부 포함)	

202 년 월 일

스쿨 원장:

(서명)

교원인사위원장 귀하

<참고 1> 겸직조사현황표(예시)

겸직허가 현황

겸직현황

(단위: 명, 원)

계	교원	직원
00명		

개인별 겸직현황

(단위: 명, 원)

소속	직위(급)	성명	겸직허가내역			
			겸직기간	겸직기관	직위(직무)	대가(수익)
			년.월.일.~ 년.월.일 (0년 0월)			00만원(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현황

위반현황

(단위: 명, 원)

계	교원	직원
00명		

개인별 위반현황

(단위: 명)

소속	직위(급)	성명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위반내역			
			겸직기간	겸직기관	직위(직무)	대가(수익)
			년.월.일.~ 년.월.일 (0년 0월)			00만원(월)

<참고 2> 겸직허가 심사 시 참고 사례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교직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사외이사 겸직은 교직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허가를 득한 후 겸직 가능
- 교직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교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부동산 임대)

- 교직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불허

(기 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교직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교직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 (예)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